

2020년도

# 제4차 이사회 서면결의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 - 목 차 -

## I. 보고안건.....1-2

1. 전차 이사회 초록 ..... 1
2.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및  
기자재 매각 입찰 결과 보고 ..... 2

## II. 심의 안건..... 3-6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변호사 선임 사전 승인 심의의 건 ..... 3-4
2. 2020년도 생활체육 전국랭킹대회 운영 취소 심의의 건 ..... 5-6

# I. 보고 안건

## 1 전차 이사회 초록

- 2020년 4월 28일 (화) 서울 올림픽공원테니스경기장 내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0년도 제3차 이사회는 임원 25명 중 13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되었습니다.
- 성원된 2020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보고안건은 총 4건으로 전차 초록 보고, 2020년도 상반기 연기 대회 현황 보고,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변경사항 보고,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Davis Cup) 보고를 진행하였고,
- 심의안건으로는 총 2건으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심의의 건, 2020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및 안전상정 심의의 건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 2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및 기자재 매각 입찰 결과 보고

### 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및 기자재 매각 입찰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 내용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제3차 이사회 및 제1차 임시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원상복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기자재 매각 공고를 올렸으나 입찰자가 전무하였고, 입찰 기준금액을 감액하여 올린 2차 및 3차 공고 또한 입찰자가 전무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하여 이미 원상복구 기한일(2020.6.30)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리시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약 10억 이상) 부과와 동시에 고발조치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어느때보다 신속한 원상복구가 우선이므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기자재 매각과 원상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 입찰공고현황

구분	입찰일시	개찰일시	기준입찰금	공고게재
1차 공고	2020.6.17-6.24일 11시 30분	6.24(수) 14:00시 협회장실	375,000,000	-대한테니스협회 홈페이지 ( <a href="http://www.kortennis.co.kr">http://www.kortennis.co.kr</a> )
2차 공고	2020.6.25-7.1일 14:00시	7.1 (수) 14:00시 협회장실	337,500.000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 <a href="https://www.sports.or.kr">https://www.sports.or.kr</a> )
3차 공고	2020.7.2-7.8일 14:00시	7.8 (수) 14:00시 협회장실	303,750,000	-나라장터 홈페이지 ( <a href="http://www.g2b.go.kr">http://www.g2b.go.kr</a> )

## Ⅱ. 심 의 안 건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변호사 선임 사전 승인 심의의 건

#### 가. 의결주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변호사 선임 사전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 나. 제안사유

우리 협회 정관 제14조 2항 7호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변호사 선임 사전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하고자 함.

\* 관련규정: 대한테니스협회 정관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협회는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 기타 중요사항

#### 다. 내용

구리시 개발제한규정 위법행위인 육사코트 건립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실내테니스장등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한 협회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등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고발을 진행하였고, 2020.07.09(수)에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관련 의견 제출 요청문서가 다음 내용과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발 내용

1. 피고인 : 주\*\* (전임 협회장)

- 죄 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적용법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구속여부 : 불구속

**2. 피고인 : 양\*\* (합동참모본부 선임 감찰관)**

- 죄 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적용법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구속여부 : 불구속

**3. 피고인 : 박\*\* (전 구리시장)**

- 죄 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방조

- 적용법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 구속여부 : 불구속

**4. 피고인 :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대표이사 곽용운)**

- 죄 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적용법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 구속여부 : 불구속

상기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사건에 대한 협회의 무죄 변론과 협회의 유죄가 선고되어 협회에 적지 않은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진행될 양형변론을 위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될 즉시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라. 의결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사전 승인하며, 변호사 선임 최종 선정 여부에 대하여는 협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함.

## 가. 의결주문

2020년도 생활체육 전국랭킹대회(동호인복식, 단식, 시니어) 운영 취소 심의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 나. 제안사유

우리 협회 정관 제4조 2항 7조에 의거하여 2020년도 생활체육 전국랭킹대회 운영 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하고자 함.

\* 관련규정: 대한테니스협회 정관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협회는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 기타 중요사항

## 다. 내용

### □ 배경 설명

1. 코로나-19 감염증 전국적 재 확산 및 장기화로 향후 추이 예단 어려움
2. 전문체육은 학교, 지도자의 관리감독으로 통제가 가능하나(마스크, 무관중, 경기장 밖 식사 등) 생활체육 전국동호인대회는 사회인의 개별 참여로 통제가 어렵고 방역에 무방비로 노출됨
3. 랭킹대회는 각 대회 주최자가 있고 협회가 승인만 하는 구조에서 각 대회들이 정부의 높은 수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선수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지자체의 보조를 받지 않는 대회의 경우, 더더욱 방역지침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4. 전국동호인대회 특성 상 선수들의 지역 간 이동, 선수 간 대면 접촉, 고령자의 대회 참가 등 선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무관중 경기 준수, 선수 간 거리두기, 경기장 내 음식물 반입 및 공용 섭취 등의 통제가 사실상 어려움
5.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지역별로 상이한 가운데, 협회가 일부 대회 개최가 가능한 지역에만 대회 승인을 할 경우, 랭킹대회의 지역 균형과 특정지역 동호인의 참가제한 등의 문제 발생
6. 협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동참하고 국민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하는데 목적이 있음

## □ 2020년도 생활체육 전국랭킹대회 현황 (별첨)

1. 동호인랭킹대회
2. 시니어랭킹대회
3. 단식랭킹대회

## □ 2020년도 생활체육 전국랭킹대회 운영 취소 이후 후속 조치

1. 코로나-19 로 인하여 2020년은 협회가 한시적으로 랭킹대회를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 대회 및 동호인에게 코로나-19 상황의 올바른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한 가이드 및 홍보 필요

- 1) 방역지침 및 대회측 준비사항
- 2) 대회 참가자 준수사항
- 3) 무 관중 경기 원칙 강조(선수, 대회 관계자 외 경기장 출입금지)

## 2. 2020년도 기 개최한 랭킹 대회에 대한 규정 마련

- 1) 2020년 랭킹대회 개최 현황
  - ① 대구청록배(1.11~18)
  - ② 제천시장배(7.4, 7.11~12), 김천배(7.11~12,18~19)

## 3. 2020년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취소 및 시상식 미 운영에 따른 후원사의 계약기간 1년 순연

- 현행 : 1) 월슨 아머스포츠코리아와 랭킹대회 공식 사용구에 대한 계약 체결 (2018~2020년 3년)  
2) 2020년 3차년도 후원금 : 현금 4천5백만원, 후원물품 5천5백만원

변경 : 랭킹대회 공식 사용구 계약기간을 2021년으로 1년 순연함

## 라. 의결 사항

2020년도 생활체육 전국랭킹대회 (동호인복식, 단식, 시니어) 운영 취소를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함.